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 시도

오대륙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 | |
|-------------------------|--------------------------|
| 1. 머리말 | 3. 과도정권 수립 추진 |
| 2. 임시정부의 당면정책과 환국 직후 활동 | 1) 신탁통치반대운동과 정권접수 기도 |
| 1) 해방과 당면정책 발표 | 2)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 추진 |
| 2) 환국 후 특별정치위원회 조직 | 3) 국민의회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 시도 |
| | 4. 맺음말 |

1. 머리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이하 임시정부)는 중경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을 맞은 임시정부가 하고자한 일이 하나 있었다.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세우고, 수립한 과도정권에 임시정부를 인계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27년 동안 유지·운영해온 임시정부를 국민들에게 봉환(奉還)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국내로 환국한 후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과도정권 수립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전개했던 다양한 노력은 해방 후 임시정부의 활동과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학계에서는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세력의 과도정권 수립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 시도 7

운동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 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 구상과 활동에 대한 연구,¹⁾ 미국과 미군정의 대한정책(對韓政策), 그리고 국내 좌우익세력의 각기 다른 과도정권 수립 방침에 따른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세력의 대응과 추진 노력에 관련된 연구 등이 그것이다.²⁾ 이러한 연구 성과로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임시정부와 그 세력들이 전개했던 활동들이 개략적으로 밝혀졌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방 후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세력들이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전개했던 활동과 추진 과정, 그리고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방 직후 임시정부가 구상했던 과도정권의 내용과 성격, 과도정권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특별정치위원회와 정치공작대·행정연구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소집했던 ‘과도적 대의체(代議體)’이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직능(職能)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와 국민의회의 활동을 규명해 보겠다.

1) 이용기, 「1945-48년 임정세력의 ‘법통정부’ 수립운동」,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오대륙,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출판부, 1997; 이승억, 「임시정부의 귀국과 대미군정 관계(1945. 8-1946. 2)」,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사연구회, 1997;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정병준,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 수립 구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김인식,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1944-1948』, 선인, 2005.

2. 임시정부의 당면정책과 한국 직후 활동

1) 해방과 당면정책 발표

한민족은 35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일제의 항복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보다 빠른 8월 10일이었다. 임시정부도 8월 10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일제의 항복 소식을 접했다.³⁾ 일제의 항복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였다. 그동안 임시정부는 연합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요구하는 이른바 ‘승인외교’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연합국과 함께 대일전쟁을 수행했다. 특히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은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 국내진입작전을 계획·준비하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획득하여 전후(戰後)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정부의 노력은 일제의 항복으로 수포로 돌아갔고, 한국의 미래 역시 타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제의 항복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는 향후 대책을 협의하였다.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위원회가 소집되었다.⁴⁾ 국무위원회에서 결정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국내에 들어가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奉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시정부가 추진해 나갈 당면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⁵⁾ 8월 17일 임시정부의 요청에 의해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39

3) 양우조·최선화(김현주 정리), 『제시의 일기』, 혜음, 1998, 239쪽.

4) 조경한, 『白岡回顧錄』, 한국종교협의회, 1985, 366쪽;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국」, 《한국근현대사연구》 25, 60-61쪽.

5) 조경한, 『백강회고록』, 366쪽.

차 임시의회였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손두환(孫斗煥), 강홍주(姜弘周) 등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위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무위원 총사직’과 ‘임시정부 개조’를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⁶⁾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金九)가 중경으로 귀환하자 휴회 상태에 있던 회의가 재개되었다. 21일 속개된 회의에서도 임시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환국하는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야당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김구는 “現職國務委員은 總辭職할 必要가 없다”고 하며 기존의 국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장을 고수하였다. 더불어 “二十七年間 우리가 代行하던 임시정부의 政權을 今日 해방된 국내인민에게 奉還한다”는 것과 “政權을 奉還하기 위하여 現 임시정부는 곧 입국”한다는 것을 정부의 ‘제의안’으로 제출했다.⁷⁾ 하지만 야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임시의회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휴회되었다.⁸⁾ 임시정부는 ‘제의안’이 임시의정원에서 합의되지 못하자 국무위원회 결의대로 ‘내각총사직 불가, 현 정부형태 입국’을 결정하였다.

임시의정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귀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환국에 앞서 국내외 동포들에게 해방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1945년 9월 3일 공포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당면정책)」이 그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성명서로서 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 구상이 담겨져 있다.

6) 배경식, 「‘반한독당세력’의 중경임시정부개조운동과 해방 후 과도정권수립구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참조.

7) 국사편찬위원회 편, 「臨時議政院會議 第39回」,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 2005, 162-163쪽.

8) 국사편찬위원회 편, 「臨時議政院會議 第39回」,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 162-164쪽.

- 一. 本 임시정부는 最速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 二.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혈전한 中·美·蘇·英 등 우방민족으로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헌장에 의하여 세계일가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 三. 연합국 중의 주요국가인 中·美·蘇·英·法 5強에 향하여 먼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外交途徑을 另闢할 것
- 四. 盟軍駐在期內에 일절 필요한 사의를 적극 협조할 것
- 五. 평화회의 및 각종 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應有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
- 六. 국외임무의 결속과 국내임무의 전개가 서로 접속됨에 필수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普選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 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七.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에 本 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認하고 本 정부의 일절 적능 및 소유물건은 과도정권에게 교환할 것
- 八.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新憲章에 의하여 조직할 것
- 九.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절 질서와 대외 일절 관계를 本 정부가 負責 유지할 것
- 十.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居在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처리할 것
- 十一. 적의 일절 법령의 무효와 新法令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절 罰犯을 사면할 것
- 十二. 적산을 몰수하고 敵僑를 처리하되 맹군과 협상·진행할 것
- 十三. 적군에게 被迫出戰한 韓籍 군인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맹군과 협상 진행할 것
- 十四.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⁹⁾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 시도 11

모두 14개조로 구성된 당면정책에는 임시정부의 향후 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임시정부는 당면정책을 통해 국내에 과도정권(過渡政權)을 수립하는 것을 자신들의 책무로 생각하고, 이러한 임무를 완수 할 때까지 ‘정부’로서 역할을 자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 수립의 세부적인 구상도 명시되어 있다. 최단 기간 내 환국하여 국내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민주 영수회의를 소집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과도정권 주도하에 전국적인 보통선거를 통해 정식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더불어 과도정권이 수립되면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과도정권에게 인계한다고 하였다.

향후 수립될 과도정권과 정식 정부의 ‘정체(政體)’와 ‘법통(法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신헌장(新憲章)’에 의거하여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건립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과도정권과 정부가 수립되기를 소망했고, 이것이 국내로 환국하여 시행할 역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 환국 후 특별정치위원회 조직

임시정부의 환국은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졌다. 미군정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석 김구는 환국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자격으로 입국한 것은 대외문제이며, 우리는 정부로서 입국한 것”이라 하였고, 대변인 역할을 하던 선전부장 엄항섭(嚴恒燮)도 “공식적으로 개인자격”이나 민중들의 인식은 다를 것이라고 하며 임시정부로 환국했음을 밝혔다.¹⁰⁾ 국내의 국민들 역시 임시정부가 환

9)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내외동포에게 고함(1945. 9. 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316-317쪽.

국한 것으로 여겼다.

임시정부는 당면정책을 통해 밝혔듯이 국내에 들어와 과도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민족통일의 최고기관’을 구성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환국 이후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국무위원회와 축소회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였다.¹¹⁾ 그 결과 12월 25일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산하에 특별정치위원회(特別政治委員會)를 조직했다.¹²⁾

당시 미군정을 비롯한 좌익과 우익진영은 임시정부와 다른 정계 통합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군정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과도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¹³⁾ 미군정의 과도정권 수립 계획은 재(在) 일본 정치고문 애치슨(George Acheson)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후 하지(John R. Hodge)와 그의 정치고문 랭던(William Russel Rangdon)에 의해 체계화되었다.¹⁴⁾

10) 《민중일보》 1945년 11월 25일자, 「金九主席 記者團과 初會見」; 《중앙신문》 1945년 11월 25일자, 「人民의 피로생긴 政府」.

11) 《민중일보》 1945년 12월 5일자, 「今日の 國務會議 當面問題를 討議」; 《민중일보》 1945년 12월 14일자, 「縮少會議設置」.

12) 《민중일보》 1945년 12월 25일자, 「새統一機關樹立目標로 特別政治委員會組織」.

13) 미군정의 ‘과도정권’ 수립계획과 추진과정은 다음의 논저와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정병준,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 수립 구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역사와 현실》 19;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편, 「獨立促成中央協議會 文書」, 『우남이승만문서』 13, 중앙일보사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1-307쪽;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137-151쪽).

14)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Ache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15, 1945), *FRUS*, Vol. 6, pp. 1091-1092);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Chief of Staff(Marshall)” (November 5, 1945), *FRUS*, Vol. 6, p. 1112);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20, 1945), *FRUS*, Vol. 6, pp. 1130-1133).

미군정이 수립한 계획은 첫째, 남한에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인물과 단체를 ‘핵심세력’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핵심세력’의 연대와 연합을 전제로 남한 내 좌우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통일전선’을 구축, ‘통합고문회의’ 내지 ‘정무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회’를 군정과 통합, ‘과도정부’로 전환한 이후 이를 북한지역까지 확대하고 정식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미군정의 이러한 구상은 향후 전개될 국내 점령 정책의 핵심으로 활용되었다.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南朝鮮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과 ‘좌우합작위원회(左右合作委員會)’, 그리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등 변형된 형태로 남한 정치 현실에 적용된 것이 그것이다.¹⁵⁾ 특히 미군정은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하는 ‘모스크바3상회의’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구상을 구체화 시켰다. 미국의 신탁통치 계획을 ‘정무위원회’ 안(案)으로 전환시키려 한 것이다.¹⁶⁾ 이를 위해 이승만(李承晩)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 이하 ‘독촉중협’)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남한 내 좌우의 세력과 임시정부를 ‘독촉중협’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독촉중협’을 통해 ‘정무위원회’ 안(案)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다.¹⁷⁾

임시정부는 미군정과 이승만을 비롯한 국내 좌우의 세력의 정계 통합 방안을 거부하고 특별정치위원회를 통해 ‘통일전선’을 구축해 나갔다. 남북을 통합

15) 브루스 커밍스(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2001(11쇄), 245쪽; 정병준,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 수립 구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역사와 현실》 19, 136쪽.

16) 정병준,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 수립 구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역사와 현실》 19, 157쪽.

17)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5(1945. 12. 26); 정병준,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 수립 구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역사와 현실》 19, 참조.

한 ‘민족통일전선’을 독자적으로 주도하려 했던 것이다.¹⁸⁾ 이를 위해 “국내 좌우 兩 계급과 각 정당, 명망 있는 혁명투사들을 총망라”하여 ‘민족통일전선’ 결성을 목표하였다.¹⁹⁾ 임시정부 내의 다양한 정당의 인물들로 조직을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특별정치위원회는 조소앙(趙素昂), 김봉준(金朋濬), 김성숙(金星淑), 최동오(崔東昨), 장건상(張建相), 유림(柳林), 김원봉(金元鳳) 등 7명의 중앙위원들로 구성되었다.²⁰⁾ 중앙위원은 임시정부 내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 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 등에 소속된 인물들이었다. 임시정부는 이들을 통해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을 비롯한 좌익 진영과 적극적인 합작을 추진하려고 했다.²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별정치위원회가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산하에 예속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통일전선’을 ‘정부(임시정부)’ 대(對) ‘정부(조선인민공화국)’ 내지 ‘정부(임시정부)’ 대(對) ‘정당(좌우익 정당) 및 단체(독촉중협)’ 등의 방식으로 결성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조직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이미 조선공산당의 ‘합동’ 제의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고 ‘정부’ 부서와 요직을 그대로 승인한 뒤 따로 2-3개의 정부 부서에 좌익이 들어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²²⁾ 또한 조경한과 성주식, 장건상 등을 포함한 임시정부는 ‘정무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독촉중

18) 《민중일보》 1945년 12월 25일자, 「새統一機關樹立目標로 特別政治委員會組織」.

19) 《민중일보》 1945년 12월 26일자, 「民族統一의 捷徑은 和平空氣造成에 있다」; 《민중일보》 1945년 12월 25일자, 「새統一機關樹立目標로 特別政治委員會組織」.

20) 《민중일보》 1945년 12월 25일자, 「새統一機關樹立目標로 特別政治委員會組織」.

21) 이용기, 「1945-48년 臨政勢力의 정부수립 구상과 ‘臨政法統論」, 《한국사론》 3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7, 182-183쪽.

22) 民主主義民族戰線宣傳部 編, 『民主主義民族戰線結成大會議事錄』, 조선정판사, 1946, 67쪽(金南植·李庭植·韓洪九, 『韓國現代史資料叢書』 12, 649쪽).

협'과의 통합을 거부하였다.²³⁾ 외무부장 조소앙 역시 1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정부와 '독촉중협'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²⁴⁾ 이를 종합해 볼 때 임시정부는 산하 기구 특별정치위원회를 통해 좌익과 우익을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 민족적 영수 회의'를 소집,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임시정부는 외부적으로 특별정치위원회 조직을 통해 '민족통일전선' 구축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내에 임시정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 설치가 그것으로 정치공작대는 미비했던 임시정부의 조직기반을 구축·강화시키고 아울러 국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행정연구위원회는 정부수립에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였다.²⁶⁾ 이 조직은 12월 6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내무부 산하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내무부장 신익희(申翼熙)가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²⁷⁾

정치공작대는 종로 6가에 있는 낙산장(駱山莊)을 중앙본부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²⁸⁾ 지방조직은 '애국심이

23) 《민중일보》 1945년 12월 20일자, 「政治水準昂揚하자. 臨政秘書長 조경한氏 談」; 《서울신문》 12월 21일자, 「左翼無視하고 統一不能」; 《신조선보》 12월 21일자, 「臨時政府의 統一案 2-3日中 公式發表」; 정병준, 「주한미군정의 '임시한국행정부' 수립 구상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역사와 현실》 19, 170-171쪽.

24) 《신조선보》 1945년 12월 26일자, 「政黨間の 統一과 臨政擴充 併行中」.

25) 《신조선보》 1945년 12월 26일자, 「政黨間の 統一과 臨政擴充 併行中」.

26) 행정연구위원회와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한국역사연구회, 1996, 참조).

27)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170쪽.

28) 신창현, 『海公申翼熙』, 海公申翼熙先生紀念會, 1992, 254-255쪽.

투철한' 지역인사들을 조직원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치공작대는 1차로 함경도, 2차로 평안도와 황해도,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순으로 중앙본부원을 파견하여 지방 조직을 구축했다.²⁹⁾ 이러한 방법으로 도(道)·군(郡)·면(面) 단위에 조직원을 임명하였고, 1946년 2월에 이르러 면 단위까지 조직 구성을 완료하였다.³⁰⁾ 행정연구위원회도 전문위원들을 임명하여 '정부' 조직에 필요한 행정(行政), 법제(法制), 후생(厚生), 교통(交通), 적산(敵産), 무역(貿易), 안보(安保), 재정(財政) 등 각 분야별 행정 자료를 수집했다.³¹⁾ 이처럼 임시정부는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통해 취약했던 국내기반을 전국 각지로 확대하였고, 정부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준비하였다.

3. 과도정권 수립 추진

1) 신탁통치반대운동과 정권접수 기도

해방을 맞아 임시정부가 우려한 것이 있었다. 한국에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임시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는 신탁통치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자 12월 28일 긴급 국무위원회를 열었고 신탁통치에 관한 임시정부의

29)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편, 『美軍CIC情報 報告書』 1, 1996, 408-413쪽.

30)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176-177쪽.

31)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편, 『美軍CIC情報 報告書』 1, 418-421쪽.

태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³²⁾ 이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전 국민과 함께 신탁통치를 반대하기로 결의했고, 각 정치단체와 ‘합작’하여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긴급조치안’과 임시정부 주석 명의로 ‘4국(國) 원수(元首)’들에게 신탁통치의 부당함과 ‘탁치안(託治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결정했다.³³⁾ 이어 각 정당과 종교단체 및 언론기관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반탁운동을 주도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³⁴⁾

임시정부는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몇 가지 방침을 마련하였다.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합하여 ‘전민족적(全民族的)’인 조직체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를 임시정부가 지도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는 국무위원 김구·조소앙·김원봉·유림·김규식·신익희·김봉준·엄항섭·최동오·조경한 등으로 구성된 장정위원(章程委員)을 조직하여 ‘위원회’를 이끌어갔다.³⁵⁾ ‘위원회’의 조직구성이 완료되자 중앙위원을 선임하였다. 장정위원들은 위원장 권동진(權東鎭)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안재홍(安在鴻)·김준연(金俊淵), 비서장 서세충(徐忠世) 등 총 76명을 선정했다.³⁶⁾

‘위원회’는 조직이 완비되자 국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12월 31일 개최된 ‘제1차 신탁통치반대행동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32) 《동아일보》 1945년 12월 29일자, 「國務委員會 緊急開催」.

33) 三均學會 編, 『素昂先生 文集』 下, 60-61쪽; 《중앙신문》 1945년 12월 29일자, 「決議四案件內容」·「四國元首에게 보내는 全文內容」.

34) 《동아일보》 1945년 12월 30일자, 「國際正義와 民族保存爲해 不合作運動展開, 臨政指揮로 國民總動員委員會設置」.

35) 《민중일보》 1945년 12월 30일자, 「聲明書」·「綱領」.

36) 《서울신문》 1946년 1월 1일자, 「國動中央委員決定」; 《동아일보》 1946년 1월 1일자, 「示威·治安은 自擔」.

회의에서는 ‘전국민’이 일치하여 탁치세력을 배격하는 시위운동과 ‘총파업’을 결의하였다.³⁷⁾ 반탁운동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각 도(道)에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되었다.³⁸⁾ 임시정부는 같은 날 동대문운동장에서 ‘신탁통치결사반대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신탁통치 ‘절대반대’와 ‘미소 양군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선서문」과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규모 시가행진을 전개하였다.³⁹⁾

해외와 국내 각 지방에도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상무위원회는 1946년 1월 2일 ‘신탁통치결사반대시민대회’ 이후 해외와 지방의 ‘반탁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 동경과 국내 각 지방에 ‘지도위원’을 파견하였다.⁴⁰⁾ 이 영향으로 부산, 부여, 목포, 안양, 원주, 광주, 김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⁴¹⁾

임시정부는 외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전 국민과 함께 반탁운동을 전

37) 撤市는 이미 29일부터 시작되었다(《중앙신문》 1946년 1월 1일자, 「空前의 大示威運動」; 《동아일보》 1946년 1월 1일자, 「臨政指令下 警察은 治安에 專力」; 《조선일보》 1946년 1월 2일자, 「臨時政府支持決議」). 임시정부가 결의한 ‘총파업’은 뒤이어 개최된 ‘위원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중지시키기로 결의되었다(《동아일보》 1946년 1월 1일자, 「示威·治安은 自擔」; 《동아일보》 1946년 1월 2일자, 「反託의 示威運動은 民族總意의 反映」).

38) 《동아일보》 1946년 1월 2일자, 「各道에 代表派遣」.

39) 《중앙신문》 1946년 1월 1일자, 「示威·治安은 自擔」.

40) 중앙위원에서 지명, 파견된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李圭彩), 강원도(李鍾郁), 충청북도(연병호), 충청남도(金明東), 황해도(양근환), 전라북도(박완), 전라남도(金鎭容), 경상북도(朴玄昊), 경상남도(김법린), 東京(李康勳)(《동아일보》 1946년 1월 3일자, 「反託中央委員會指令」).

41) 《조선일보》 1946년 1월 13일자, 「金浦郡民도 託治抗爭」; 《동아일보》 1946년 1월 15일자, 「二萬名捺印誓約 臨時政府奉戴, 託治絶對反對」; 《동아일보》 1946년 1월 17일자, 「地方의 反託烽火」.

개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려고 했다. ‘정권접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은 임시정부 내부무 산하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가 맡았다.⁴²⁾ 정치공작대의 총 책임자 신익희는 12월 29일 서울시내 9개 경찰서장을 정치공작대 중앙본부인 낙산장으로 불러 임시정부 지시에 따라 반탁운동에 호응할 것을 명령하였다.⁴³⁾ 또한 행정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임시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접수’한다는 「포고문(布告文)」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포고문」은 1945년 12월 31일 내무부장 신익희의 명의로 발표되었다.

임시정부는 「포고문」 ‘국자(國字) 1호(號)’와 ‘국자(國字) 2호(號)’를 통해 미군정의 지휘를 받고 있던 “한인 직원 및 경찰기관을 임시정부로 예속시킨다”고 선언했다.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⁴⁴⁾ 임시정부가 발표한 「포고문」의 효과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영향을 미쳤다.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미군정청 ‘한국인 직원’들이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 것이 그것이다.⁴⁵⁾ 이러한 활동은 당시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던 정치공작대의 지방조

42)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참조.

43) 유치송, 『해공신익희일대기』,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84, 453쪽; 《동아일보》 1945년 12월 30일자, 「總辭職聲明 軍政廳朝鮮人職員」; 《자유신문》 1945년 12월 31일자, 「各署署長들 態度를 表明」·「軍政協力不應 京畿道 各課長協議」; 《서울신문》 1946년 1월 5일자, 「市內八警察署長 辭任」.

44) 《민중일보》 1946년 1월 1일자, 「臨政託治不合作方針 三十一日 內務部發表」.

45)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에서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 군수, 지방 군정청 조선인 직원, 경찰서장 등이 총사직을 단행하였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道內 군수 22명과 22개의 경찰 서장, 경상북도 군정청 조선인직원 모두가 총 사직을 결의하기도 했다(《대구시보》 1945년 12월 30일자, 「道內朝鮮人官吏總辭職, 軍政廳에 決議文提出코 抗議」; 《대구시보》 1946년 1월 1일자, 「臨時政府의 指示따라 道內官吏 行動決定」; 《민주중보》 1945년 12월 31일자, 「道職員總辭職」; 《민주중보》 1946년 1월 3일자, 「都廳職員總辭

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치공작대는 지방조직을 통해 「포고문」을 전국에 배포했고, 중앙본부원을 지방조직에 파견하여 ‘반탁운동’을 지도하였다.⁴⁶⁾

임시정부의 ‘정권접수’ 시도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임시정부와 미군정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하지만 임시정부의 일련의 행동들, 다시 말해 「국자포고」 발표와 ‘총파업’ 지시에 대해 미군정은 자신들의 ‘정권’을 탈취하려는 ‘쿠데타’로 받아들였다.⁴⁸⁾

이와 함께 ‘정권접수’ 시도는 향후 임시정부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군정은 그동안 임시정부의 활동을 묵인하고 용인해 주었던 방침에서 벗어나 임시정부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⁴⁹⁾

2)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 추진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추진한 가장 큰 목표는 국내에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임시정부는 당면정책을 통해 국내에 환국하여 과도정권을 세우고, 수립된 과도정권에게 임시정부를 인계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천명한 바 있었다. 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정권접수’ 시도가 좌절되자 과도정권 수립을 준비하였다. ‘과도적 국회’를 조직하여 이를 근거로 과도정권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職에 部長과 靑年職員 對立」).

46) 유치송, 『해공신익희일대기』, 455쪽.

47)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90쪽.

48)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7(1946. 1. 8); 『駐韓美軍史(HUSAFIK)』 2, 돌베개, 1988, 145, 151-152쪽.

49)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91쪽; 정용욱, 「미군정의 임정관계 보고서」, 《역사비평》 22, 역사비평사, 1993, 364쪽, 375쪽.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활동은 비상정치회의(非常政治會議)를 소집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임시정부는 1월 4일 국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망라한 비상정치회의의 소집을 결의하였다.⁵⁰⁾ ‘과도적 대의체(代議體)’ 비상정치회의를 기반으로 과도정권을 수립한 뒤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정식정권’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내 정당 통합회의를 비상정치회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정당 통합회의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통일전선 결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⁵¹⁾ 한국민주당·국민당·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신한민족당이 참여한 4당회의와 5당회의가 그것이다.⁵²⁾ 임시정부는 이를 비상정치회의 예비회의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좌익진영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⁵³⁾

정당 통합회의가 결렬되자 임시정부는 독자적으로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20일 국내외 21개 각 정당, 단체, 종교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비상정치회의주비회를 개최했다.⁵⁴⁾ 비상정치회의주비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승만과 ‘독촉중협’이 합류하였다. 당초 비상정치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참가를 결정한 이유는 미군정과 이승만의 ‘모종(某種)의 예정안’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를 앞두고 이승만의 ‘독촉중협’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남한 내 ‘대표기구’ 조직을

50) 《민중일보》 1946년 1월 5일자, 「過渡政權 樹立에 對하여, 臨時政府聲明書發表」.

51) 이승억, 「임시정부의 귀국과 대미군정 관계(1945. 8-1946. 2)」, 《역사와 현실》 24, 114-115쪽.

52) 《자유신문》 1946년 1월 8일자, 「人共, 臨政代表도 會合, 統一政府結成準備」; 《민중일보》 1946년 1월 10일자, 「臨政人共側立會下 五政黨會合開始」.

5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339-340쪽.

54) 《신조선보》 1946년 1월 20일자, 「非常政治會議 20일 臨時政府에서 招請」; 《조선일보》 1946년 1월 21일자, 「召集集團」.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은 하지의 특별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사설 고문’ 굿펠로우(Preston M. Goodfellow)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임시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했던 비상정치회의에 ‘독촉중협’을 참여시켜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를 조직하게 만들고, 비상국민회의를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南朝鮮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 이하 민주의원)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 그것이다.⁵⁵⁾

이러한 계획은 미군정의 임시정부 해체 방침과 맞물려서 진행되었다. 12월 31일 임시정부의 ‘정권접수’ 시도로 인해 미군정은 더 이상 임시정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미군정은 1946년 1월 15일 “지금까지 임시정부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박탈하고 임시정부의 해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하지 역시 1월 18일 군정장관 러치(Archer L. Learch)에게 “지금 이 임시정부 집단을 해체시킬 시점이며 관련 인사들은 임시정부와 일체의 관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임시정부 집단이 국민의회(National Congress)를 소집하거나 독자적인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훈령도 함께 지시했다.⁵⁶⁾ 이처럼 ‘독촉중협’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구상과 협의에 따라 비상정치회의의 참여를 결정하였다.⁵⁷⁾ ‘독촉중협’이 참여하게 되면서 비상정치회의의 명칭은 비상국민회의로 변경되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달여간의 준비를 거쳐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기구를 결성하였다. 비상국민회의가 그것이다. 1946년 2월 1일 임시정부 요인

5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January 28, 1946), *FRUS*, Vol. 8, p. 627;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61-76쪽. 참조: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530-536쪽 참조.

56) 『駐韓美軍史(HUSAFIK)』 2, 180-183쪽;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516쪽.

57)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편,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중앙집행위원회 제5회 회의록」, 『우남이승만문서』 13, 289-298쪽;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편, 「非常國民大會代表會 第3回 會議錄」, 『우남이승만문서』 13, 403-410쪽.

들을 비롯한 비상국민회의주비회에서 선임한 좌우익 진영의 인사들과 정당 및 단체, 그리고 각 도(道)의 대표들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명동 천주교 대강당에서 비상국민회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⁵⁸⁾ 임시정부의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을 계승하고 동시에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과도적 대의체’ 비상국민회의가 성립된 것이다.⁵⁹⁾

2월 1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비상국민회의 창립대회에서는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제반 사항이 결정되었다. 첫 번째는 비상국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공산당과 인민당, 독립동맹 등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하고 이를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지는 ‘건의서’로서 이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⁶⁰⁾ 두 번째는 권동진을 포함한 101명의 연서로 상정된 ‘긴급결의’로 그 내용은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최고정부위원회(最高政務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전형은 김구와 이승만에게 일임 한다”는 것이었다.⁶¹⁾ ‘긴급결의’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⁶²⁾ 마지막으로 의장에 홍진(洪震), 부의장에 최동오를 선출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9인을 전형위원으로 선임하였다.⁶³⁾

2일 속개된 2차 회의에서는 비상국민회의 본연의 고유 임무에 관한 내용

58) 「非常國民會議代議員」(1946년 2월, 한국연구원 소장).

59) 「非常國民會議組織大綱」(1946년 2월, 한국연구원 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 편(4)』, 1995, 869쪽;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21(1946. 2. 5).

60) 「緊急建議書」(1946년 2월 1일, 한국연구원 소장); 《조선일보》 1946년 2월 4일자, 「政務委員會를 設置, 非常國民會議無期休會」.

61) 「緊急決議」(1946년 2월 1일, 한국연구원 소장); 《동아일보》 1946년 2월 4일자, 「李博士와 金九先生에게 最高諸政務를 一任」).

62) 최고정부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의는 투표(반대 27명, 찬성 106명)를 통해 통과되었다(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21(1946. 2. 5)).

63) 《世界日報》 1946년 2월 2일자, 「議長에 洪震氏就任, 政府樹立은 李博士, 金九主席에 一任」; 《한국민주당특보》 1946년 2월 10일자, 「非常國民會議開催」(한국연구원 소장).

이 논의, 결의 되었다. 먼저 13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13명의 각 위원장과 90여 명의 산하 위원들을 선정하였다.⁶⁴⁾ 향후 구성될 정부의 성격과 조직,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이자 나라의 법적 기본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헌법과 선거법 제정이 그것으로 비상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헌법과 선거법기초위원을 선정하였다. ‘기초위원’ 들은 임시의정원에서 기초한 임시헌장을 기반으로 현실에 적합하게 헌법과 선거법을 수정 및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법제위원을 중심으로 대의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수정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⁶⁵⁾ 새로운 ‘정부’와 ‘국회’를 조직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임시헌장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2월 14일 자주적인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임시정부의 계획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비상국민회의의 결의로 조직된 최고정무위원회가 ‘민주의원’이라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최고정무위원회는 ‘형식상’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직능을 계승한 기구였다. 임시정부 요인이자 비상국민회의 선전부장 엄항섭은 최고정무위원회의 주된 역할을 ‘자주적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산파역’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고정무위원회가 과도정권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정과 ‘합작’, ‘자문자격’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다.⁶⁶⁾ 당시 임시정부는 “南北을 점령한 각각의 軍政下에서 南北을 통일하고 자주독립을 하는 방법은 그 軍政과 합작하는 과정인 合法運動이 필요하다”는 조소앙의 주장처럼 과도정권 수립을

64) 《한국민주당특보》 1946년 2월 10일자, 「非常國民會議機關 十三部の 委員을 選定發表」(한국연구원 소장).

65) 《동아일보》 1946년 2월 4일자, 「當分間休會 第二日の 經過」; 《동아일보》 1946년 2월 10일자, 「憲法修正委員選定」; 《조선일보》 1946년 2월 12일자, 「臨時政府憲章繼承」.

66) 《동아일보》 1946년 2월 14일자, 「產婆役으로 활동 政務委員會 性格과 任務」.

위해 미군정과 대립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협약’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자주적 과도정권이 확립 될 때까지 임시정부는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⁸⁾

하지만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부위원회는 미군정과 이승만이 의도했던 ‘자문기구’ 민주위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⁶⁹⁾ 김성숙과 장건상 등이 비상정치회의주비회를 탈퇴하면서 주장한 ‘모종(某種)의 예정안’이 ‘민주의원’이라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민주위원은 일종의 ‘과도정부’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비상국민회의와 임시정부의 역할과 상징성을 배제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대비하기 위한 ‘자문기구’였다.⁷⁰⁾ 미군정과 이승만의 구상이 민주의원 성립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은 민주위원과 비상국민회의가 별개의 존재이자 그 성격과 임무 역시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진을 비롯한 임시정부는 민주위원을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주요 조직이자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그리고 비상국민회의는 전국적인 ‘민위(民意)’에 기초한 자주적인 존재이자 민주위원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인식했다.⁷¹⁾ 이는 민주위원을 비상국민회의의 ‘국회’의 기능과 임시정부의 ‘행정부’적 직능을 계승한 ‘전민족적 대표기구’로 인식한 미군정과 이승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주석 김구 역시 민주의원 결성식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기구로서의 비상국민회의 결의로 민주위원이 성립되었다”며 두 기관의 차별성과 연관성을 부각시

67) 《조선일보》 1946년 2월 22일자, 「當面の 南北情勢는 遺憾」.

68) 《동아일보》 1946년 2월 14일자, 「產婆役으로 활동 政務委員會 性格과 任務」.

69) 《조선일보》 1946년 2월 15일자, 「大韓國民代表民主議院成立」.

70)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1997, 68-76쪽.

71)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March 19, 1946), *FRUS*, Vol. 8, pp. 648-652; 《서울신문》 1946년 3월 21일자, 「民議와 非常國民會議는 別個」.

켰다.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국민회의 소집을 통한 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 노력은 결과적으로 임시정부의 위상과 ‘법통성’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비상국민회의 소집 과정에서 분열된 국내 정치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고 미군정의 압박, 그리고 미군정과 연계한 이승만의 합류로 임시정부가 의도했던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해방동맹 계열, 그 중에서도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김원봉·성주식(成周寔)·장건상·김성숙 등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었다.⁷³⁾ 1944년 중경에서 좌우익이 망라되어 조직된 연합정부 임시정부가 민주의원 성립을 계기로 축소된 것이다. 더욱이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가 민주의원으로 전환되자 임시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임시정부를 탈퇴한 김성숙은 이를 임시정부의 해산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⁷⁴⁾

3) 국민의회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 시도

임시정부는 민주 의원이 결성되자 당시 정치 상황에서 더 이상 임시정부라는 명의를 사용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남은 것은 ‘법통성’이라는 상징성과

72) 《대동신문》 1946년 2월 15일자, 「正式政府의 完成을 온갖 工作으로 斷行」.

73) 장건상, 「非常國民會議委員選任을 謝絶함」(1946년 2월 3일, 한국연구원 소장); 《동아일보》 1946년 1월 24일자, 「臨政三要人脫退 非常政治會議準備會에서」; 《동아일보》 1946년 2월 16일자, 「議長十五名選舉 左派의 結成大會經過」.

74)金星淑, 「嗚呼! 臨政 30年만에 解散하다」, 《月刊中央》, 중앙일보사, 1968년 8월호, 84-95쪽.

한국독립당이였다. 김구를 포함한 한국독립당 등 임시정부 세력은 임시의정원과 비상국민회의를 계승한 국민의회를 통해 재차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1946년 12월 김구는 대대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기로 이승만과 합의하였다. 당시 미군정은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을 수립하여 정국을 재편하고 있었다. 김구와 이승만은 미군정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던 정치 상황을 타계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에 김구는 ‘법통론’을 기반으로 임시정부를 확대·강화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구상을, 이승만은 도미(渡美)하여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진행, 국면을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⁷⁵⁾ 양자는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었지만 대체로 이승만의 방안을 미국에서 먼저 실행하고, 실패할 경우 임시정부의 구상을 실천한다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협의안은 미국에서 ‘모스크바3상회의 결의’ 폐기와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하고, 국내에서 대대적인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⁷⁶⁾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먼저 기관지 《독립신문》의 신년사를 통해 1947년을 ‘독립의 해’로 설정하고 신탁통치 반대와 ‘자주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다.⁷⁷⁾ 1947년 1월 11일 미소 양 군정이 1946년 10월부터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더욱 확대되었다.⁷⁸⁾

75)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633-634, 648쪽.

76)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633-634쪽 참조.

77) 《독립신문》 1947년 1월 6일자, 「新年辭, 猪突的으로 進取하자. 우리의 完全自主獨立을!」.

78) 《민주일보》 1947년 1월 12일자, 「共委再開에 兩司令官交翰 蘇, 三條件을 提議. 美는

김구와 조소앙은 하지를 방문하여 “생명을 걸고 반탁을 하겠다”며 강력한 신탁통치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고,⁷⁹⁾ 한국독립당은 “信託의 감투를 쓴 임정수립은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⁸⁰⁾ 16일 비상국민회의 등 우익 진영 35개 단체도 “미국·소련·영국·중국·프랑스 정부와 국민에게 신탁제도의 취소를 요망하는 동시에 신탁통치를 준비하는 여하한 기구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는 1월 24일 반탁운동을 주도할 통일기구 반탁독립투쟁위원회(反託獨立鬭爭委員會)를 결성하였다. 우익 42개 단체를 망라한 반탁독립투쟁위원회는 김구가 위원장을 맡았다.⁸¹⁾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은 반탁운동을 통해 정계를 주도하게 되자 임시의정원과 비상국민회의를 계승한 입법기관 국민의회를 설립하였다. 김구는 2월 8일 비상국민회의·민족통일총본부(民族統一總本部)·독립촉성국민회(獨立促成國民會)의 통합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독립운동의 ‘범통’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를 확대·강화하여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 개조하지는 비격(飛檄)을 발표했다. 이는 비상국민회의를 중심으로 3단체 통합을 요구한 것이었다.⁸²⁾ 2월 10일에도 「삼천만동포에게 경고함」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재차 비상국민회의가 중심이 되는 독립진영 ‘최고기구’ 설치를 주장했다.⁸³⁾ 이에 따라 비상국민회의는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全國代議員大會)를 소집하여 3단체를 통합하여 대한민국국민의회(大韓民國國民議會, 이하 국민의

一部修正을 要求」.

79) 《민주일보》 1947년 1월 17일자, 「意思表示封鎖아니다. 金九氏等 ‘하’中將會談內容」.

80) 《동아일보》 1947년 1월 14일자, 「共委書翰發表와 各界의 反響」.

81) 《동아일보》 1947년 1월 26일자, 「反託獨立鬭爭會를 結成, 部署와 實踐委員도 選出」.

82) 《독립신문》 1947년 2월 20일자, 「金九主席의 獅子吼, 右翼陣營強力化」; 《조선일보》 1947년 2월 9일자, 「國議, 獨促, 民統, 政黨, 團體, 同志에 敬告」.

83) 엄항섭 편, 「三千萬同胞에게 敬告함」, 『金九主席最近言論集』, 삼일출판사, 1948, 69-78쪽.

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⁴⁾ 국민의회는 임시의정원과 비상국민회의의 ‘법통’과 직능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역사적 독립기관이자 독립운동의 피 묻은 최고기구”이자 ‘상설적 대의체’, 나아가 민족의 대표기구임을 자임했다.⁸⁵⁾ 그리고 남한만의 ‘국부적(局部的)’인 국회가 아닌 ‘통일 대한민국’ 국회로서 그 기능을 실현하고자 했다.⁸⁶⁾

조직을 새롭게 일신한 국민의회는 재차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축성국민회는 3월 1일 전국국민대표자대회(全國國民代表者大會)를 소집하여 “국민총의를 대표한 법통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봉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를 국민의회에 “즉시 실현해 주기를 건의”하였다.⁸⁷⁾ 같은 날 전국학생총연맹(全國學生總聯盟) 역시 임시정부를 봉대하였다.⁸⁸⁾ 이러한 임시정부 봉대 움직임에 따라 국민의회는 1947년 3월 3일 임시의회를 개최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했다.⁸⁹⁾ 과도정권은 임시정부를 정비·강화하는 방법으로 완성하였다. 3월 5일에는 국민의회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 과도정권 수립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할 시기에 대해 논의했고, 3월 6일 ‘합법적’인 과도정권 수립을 공포하기로 결의하였다.⁹⁰⁾

그러나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의 과도정권 수립 시도는 미군정의 저지로 실현되지 못했다. 3월 5일 미군정은 ‘정부수립’을 선포하면 ‘반란행위’로 규정,

84) 《대동신문》 1947년 2월 15일자, 「非常國民會議 全國大會開幕」; 《경향신문》 1947년 2월 18일자, 「統合問題可決 國民議會로 改稱」.

85) 「國民議會」(1947년 8월, 김병기 소장).

86) 「大韓民國國民議會組織大綱」(1947년 9월, 김병기 소장).

87) 「大會宣言(全國國民代表者大會)」(1947년 3월 1일, 김병기 소장).

88) 《동아일보》 1947년 3월 1일자, 「全國學生總聯盟 記念大會에 總參加」.

89) 《조선일보》 1947년 3월 5일자, 「臨政國務委員補選? 國民議會代議員會議서」.

90) 《조선일보》 1947년 3월 6일자, 「國民議會, 國務委員 連席會議 六日正式公佈議決?」.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⁹¹⁾ 또한 미군방첩대 CIC와 경찰이 경교장과 한국독립당 당사(黨舍)를 수색하여 ‘대한민국특별행동대사령부포고령(大韓民國特別行動隊司令部布告令) 제1호’ 및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등 임시정부 세력을 압박했다.⁹²⁾ 더욱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도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다.⁹³⁾ 이후 임시정부 세력과 국민의회는 현실 정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한민국헌장(大韓民國憲章)」을 기초하고, 선거법을 제정하는 등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4. 맺음말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세력은 해방된 한국에 자주적인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임시정부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다. 9월 3일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당면정책)」을 통해 국내외에 임시정부의 환국방침을 천명한 것이 그것으로 핵심은 국내에 과도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책무이며, 이러한 임무를 완수 할 때 까지 ‘정부’로서 역할을 자임한다는 것이었다. 정부 수립의 구체적인 계획도 명

9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77(1947. 3. 6);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78(1947. 3. 1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471(1947. 3. 5).

92)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77(1947. 3. 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474(1947. 3. 8); 《경향신문》 1947년 3월 6일자, 「雲岷宮等を搜索, 特別行動隊布告文押收」; 《민주일보》 1947년 3월 6일자, 「雲岷宮을搜索, 行動隊布告文等押收」.

93)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78(1947. 3. 1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473(1947. 3. 7).

시하였다. 최대한 기간 환국하여 국내 각계각층 대표들을 소집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과도정권이 수립되면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과도정권에게 인계한다고 하였다.

임시정부는 당면정책을 통해 밝혔듯이 국내에 들어와 과도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민족통일의 최고기관'을 구성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정치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자주적인 과도정권 건설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으로 특별정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5년 12월 25일 조직된 특별정치위원회는 미군정과 이승만을 비롯한 국내 좌우익 세력의 정계 통합 방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남북을 통합한 '민족통일전선'을 주도해 나갔다. 두 번째는 국내에 임시정부 조직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치공작대는 미비했던 임시정부의 기초 토대를 구축하고 아울러 국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행정연구위원회는 정부수립에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 조직은 12월 6일 내무부 산하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내무부장 신익희가 운영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임시정부는 즉각 이를 거부하는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역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긴급 국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국민과 함께 신탁통치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반탁운동을 주도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조직을 완비한 뒤 국민들과 함께 탁치세력을 배격하는 시위운동과 철시와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는 미군정에게 직접 '정권'을 접수하려고 했다. '정권접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은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가 맡았다. 책임자 신익희는 12월 29일 서울 시내 9개 경찰서장을 정치공작대 중앙본부로 불

러 임시정부 지시에 따라 반탁운동에 호응할 것을 명령했다. 더불어 ‘국자 1호’와 ‘2호’를 통해 미군정의 지휘를 받고 있던 한인 직원 및 경찰기관을 임시정부로 예속시킨다고 선언하였다.

임시정부의 ‘정권접수’ 시도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미군정은 임시정부의 활동과 반탁운동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임시정부가 추진한 ‘정권 이양’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임시정부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정권접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내 각계 각층 대표들을 망라한 ‘과도적 국회’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여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했다. 한 달여간의 준비를 거쳐 1946년 2월 1일 ‘과도적 대의체’ 비상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임시정부의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을 계승하고 동시에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과도적 대의체’ 비상국민회의를 설립한 것이다.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임시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비상국민회의의 결의로 조직된 최고정부위원회가 민주의원이라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비상국민회의의 소집을 통한 과도정권 수립 노력은 결과적으로 임시정부의 위상과 ‘법통성’을 위축시켰다. 또한 임시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혁신세력’들이 임시정부를 떠났고, 임시정부를 탈퇴한 김성숙은 이를 임시정부의 해산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민주의원 결성 이후 더 이상 임시정부로 명의로 활동할 수 없었던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은 1947년 1월 반탁운동을 통해 정계를 주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비상국민회의와 민족통일총본부·독립촉성국민회를 통합하여 국민의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회는 비상국민회의가 소집한 제2차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성립되었다. 국민의회는 임시의정원과 비상국민위원회의 법통을 계승한 ‘상설적 대의조직’이자 민족의 대표기구임을 자임하였다.

조직을 일신한 국민의회는 재차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촉성국민회와 전국학생총연맹이 3월 1일 임시정부의 봉대를 선언하자 3월 3일 이를 수용, 과도정권을 수립한 것이 그것이다. 과도정권은 임시정부를 정비·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김구와 임시정부의 과도정권 수립 시도는 미군정의 저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역시 여기에 협조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세력은 당면정책에 따라 국내에 과도정권 수립을 시도했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승만을 비롯한 좌우익 진영이 과도정권 수립에 참여를 거부했고, 미군정 역시 이러한 시도를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세우고, 수립한 과도정권에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인계한다는 방침은 실현되지 못하였다.